

대 법 원

제 3 부

판 결

- 사 건 2026도541 가.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리목적성  
착취물판매등)
- 나.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배  
포등)
- 다.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영리목적카  
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)
- 라.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  
지등)
- 마.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  
용촬영·반포등)
- 바.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허위영상물  
편집·반포등)
- 사.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
(음란물유포)
- 아.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  
용촬영물소지등)

자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허위영상물  
소지 등)

피 고 인	피고인
상 고 인	피고인 및 검사
변 호 인	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원화 외 2인
원 심 판 결	광주고등법원 2025. 12. 17. 선고 (제주)2025노71 판결
판 결 선 고	2026. 4. 30.

## 주 문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
## 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1.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

가. 원심 판시 무죄 부분

1) 대상 공소사실의 요지

가)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'성폭력처벌법'이라 한다) 위반(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)

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

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에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. 12. 14. 22:34경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SNS 텔레그램 불상 그룹 또는 채널에 참여하여 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등장하여 다리를 벌린 채 가슴과 음부를 드러낸 모습을 촬영한, 배포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촬영물인 파일명 '14081194\*\*\*\*.mp4'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, 그때부터 2020. 5. 15.까지 같은 방법으로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1 부터 113 기재와 같이 총 113개의 촬영물(이하 '이 사건 촬영물'이라 한다)을 저장한 후 2024. 12. 16.경까지 소지하였다.

나) 성폭력처벌법 위반(허위영상물 소지 등)

누구든지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·합성물·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. 5. 5.경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당시 피고인이 다니던 ○○○대학교 △△△과 여자 동기생의 얼굴 사진과 성명불상의 여성이 가슴을 드러낸 사진을 합성한 합성물 파일 'files\_190505\_045114\_\*\*\*.jpg'을 제작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, 그때부터 2020. 12. 21.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95개의 허위영상물(이하 '이 사건 허위 영상물'이라 한다)을 저장한 후 2024. 12. 16.경까지 소지하였다.

## 2) 원심의 판단

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, 촬영물 및 허위영상물 소지자의 소지 개시 행위 이후, 소지자가 그 촬영물 및 허위영상물에 대한 지배력의 유지·강화를 위해 당초의 소지 개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를 한 때 소지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, 종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소지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, 성폭력처벌법 위반(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)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(허위영상물 소지 등)죄의 각 처벌법규가 신설되어 시행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 및 허위영상물에 대한 지배력의 유지·강화를 위해 당초의 소지 개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대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.

## 3) 대법원의 판단

### 가) 관련 법리

2020. 5. 19.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(이하 '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'이라 한다)을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(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)죄의 규정을 신설하였고(제14조 제4항), 2024. 10. 16.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등이나 복제물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반포 등에

동의하지 않은 편집물 등(이하 '허위영상물'이라 한다)을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(허위영상물 소지 등)죄의 규정을 신설하였다(제14조의2 제4항).

여기서 '소지'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(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도6278 판결, 대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23도5757 판결 등 참조), 성폭력처벌법 위반(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)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(허위영상물 소지 등)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(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2도15319 판결,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도6278 판결 등 참조).

계속범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계속범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계속범의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(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도15669 판결,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3도3549 판결 등 참조). 그러나 계속범의 실행행위가 처벌법규 시행 전에 개시되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된 이상 처벌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.

따라서 계속범인 성폭력처벌법 위반(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)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(허위영상물 소지 등)죄의 경우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하여 이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계속된 이상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(카메라 등 이

용 촬영물 소지 등)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(허위영상물 소지 등)죄로 처벌할 수 있다.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한 지배력의 유지·강화를 위해 당초의 소지 개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.

#### 나) 판단

(1)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,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 위반(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)죄의 처벌법규 시행일인 2020. 5. 19. 전에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, 성폭력처벌법 위반(허위영상물 소지 등)죄의 처벌법규 시행일인 2024. 10. 16. 전에 이 사건 허위영상물을 각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에 저장한 뒤 이를 각 처벌법규 시행일 이후까지 그대로 저장한 상태로 있던 중 2024. 12. 16. 수사기관에 의하여 이를 압수당한 사실이 인정된다.

(2)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.

대상 공소사실의 성폭력처벌법 위반(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) 부분 중 이 사건 촬영물 각 소지 개시일부터 그 처벌법규 시행일 전인 2020. 5. 18.경까지 행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(허위영상물 소지 등) 부분 중 이 사건 허위영상물 각 소지 개시일부터 그 처벌법규 시행일 전인 2024. 10. 15.경까지 행위는 각 신설된 법규인 성폭력처벌법 위반(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)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(허위영상물 소지 등)죄로 처벌할 수 없다.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.

그러나 대상 공소사실의 성폭력처벌법 위반(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) 부분 중 그 처벌법규 시행일 이후인 2020. 5. 19.경부터 소지 행위 종료 시점인 2024. 12.

16.경까지 행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(허위영상물 소지 등) 부분 중 그 처벌법규 시행일 이후인 2024. 10. 16.경부터 소지 행위 종료 시점인 2024. 12. 16.경까지 행위의 경우,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 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던 이상,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로써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(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)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(허위 영상물 소지 등)죄로 처벌할 수 있다.

(3)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, 대상 공소사실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(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)의 경우 2020. 5. 19.경부터 2024. 12. 16.경까지 행위 부분, 성폭력처벌법 위반(허위영상물 소지 등)의 경우 2024. 10. 16.경부터 2024. 12. 16.경까지 행위 부분에 대하여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(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)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(허위영상물 소지 등)죄로 규율할 수 없다고 보았다.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(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)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(허위영상물 소지 등)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.

#### 나. 원심 판시 유죄 부분

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,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.

#### 2.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

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(무죄 부분 제외)을 유죄로 판단하였다.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의 관련성



대법관 노경필 \_\_\_\_\_

주 심 대법관 이숙연 \_\_\_\_\_